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7. 14(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7. 2.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4. 7. 2.

라. 상정일자 : 2014. 7. 10(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명 변경을 통한 학교의 지역 인지도 제고와 송도·청라국제도시, 서창·가정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지역 학생 배치를 위한 2014~2016학년도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개발지역 원아 배치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 예정교(전환 신설 포함)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 융합 영재교육을 선도·견인하는 세계수준의 영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과학예술영재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나.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은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요내용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중학교	명칭 변경	방축중학교 → 인천예일중학교	안 별표 2
고등학교	신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안 별표 1
중학교	신설	인천청람중학교	안 별표 2
초등학교	신설	인천경일초등학교,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초등학교	안 별표 3
유치원	신설	인천검암유치원, 인천경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 별표 6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유치원	삭제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단설유치원(인천검암유치원)으로 전환	안 별표 6
중학교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에 따른 위치변경	만월중학교	안 별표 2
초등학교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에 따른 위치변경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안 별표 3
유·초·고·각 중학교	학교 위치 도로명주소 변경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해원 고등학교,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하늘 초등학교,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리유치원,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봉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명 변경을 통한 학교의 지역 인지도 제고와 개발지역 학생 배치를 위한 2014~2016학년도 신설 예정교, 단설유치원 신설 예정교(전환 신설 포함), 세계수준의 영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등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검토내용

- 지역개발 등으로 신설 예정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외 13교에 대한 교명과 위치를 명시하고, 신설 이전에 따른 만월중학교 외 2개교에 대한 위치변경 사항은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2004년에 방축중학교와 동시에 개교한 인근의 방축고등학교는 인천예일고등학교로 2005년에 교명을 변경하였으나, 방축중학교는 현재까지 10년간 기존교명을 사용하다 이번에 “인천예일중학교”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교명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4.4.10.)

급별	교명	교명변경(안)	심의결과	사유
중	방축중학교 (防築中學校)	인천예일중학교 (仁川禮一中學校)	원안 가결	○ 예의 중심학교 교육방향 표현 ○ 인접 예일고 교명과의 통일성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청라국제도시에 가칭 도담초등학교의 교명이 교명 공모제를 통해서 경일초등학교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경일초 보다는 도담초를 선호함

(답변) 가칭 도담초의 교명은 공모제를 통하여 정하였음.

(질의) 경일초를 도담초로 수정할 것을 요청함

(답변)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수정)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별표 3 중 “인천경일초등학교”를 “인천도담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 별표 6 중 “인천경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인천경일초등학교”를 “인천도담초등학교”로
“인천경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2조 별표 3]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경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제2조 별표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경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부칙 제2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만월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u>인천경일초등학교</u>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u>인천경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u> 부분은 2015년 3월 1일	부칙 제2조 ----- ----- ----- ----- <u>인천도담초등학교</u> ----- ----- <u>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u> -----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해원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8번길 34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72
인천해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 140번길 25

별표 1 중 인천해원고등학교란 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

별표 2 중 만월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4-1

별표 2 중 방축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예일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39

별표 2 중 인천해원중학교란 다음에 인천청람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4

별표 3 중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송명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1-4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6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별표 3 중 인천송명초등학교란 다음에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인천장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별표 5 중 인천한누리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5

별표 6 중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라유치원,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영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6
청라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인천송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봉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1-4
인천송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별표 6 중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검암유치원,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검암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99번길 45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검암유치원 부분은 2014년 9월 1일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만월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년 3월 1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년 9월 1일
4.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부분은 2016년 3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고 등 학 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90	인천영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8번길 34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4	인천연송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72				
인천해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9-4	인천해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 140번길 25				
<신 설>	<신 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				

[별표 2]

중 학 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4-1				
방축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39	인천예일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39				
<신 설>	<신 설>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4				

[별표 3]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70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438	인천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1-4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32번길 31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707-1	인천영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5-6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6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2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104-1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신 설>	<신 설>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신 설>	<신 설>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신 설>	<신 설>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신 설>	<신 설>	인천장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별표 5]

각 종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0-2	인천한누리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5

[별표 6]

유 치 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99번길 45	<삭 제>	<삭 제>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707-1	인천영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33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5-6	인천청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6
청라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58-6	청라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2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104-1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4
인천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438	인천봉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67번길 11-4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5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신 설>	<신 설>	인천검암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99번길 45
<신 설>	<신 설>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4
<신 설>	<신 설>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4
<신 설>	<신 설>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신 설>	<신 설>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
<신 설>	<신 설>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
<신 설>	<신 설>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
<신 설>	<신 설>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

관계법령

관계법령	<div style="margin-bottom: 20px;"> <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div> <div> <input type="checkbox"/>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div>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